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컨설팅 안내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 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연구인력비(기자재)세액공제, 정책자금, 정부R&D 지원사업 활용가능, 병역특례업체 신청시 가점,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제도 신청(기업부설연구소)

■ 신고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소 창업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인증혜택

구분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세제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	